

中國林業政策 概況

李 英 淚

中國延邊農學院

40년이래, 중국임업은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왔다. 임업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로 없던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변화가 많던데로부터 안정한데로 발전하여 왔다. 지금은 이미 법제의 궤도에까지 올라 중국임업의 발전과 진흥의 튼튼한 초석이 되고 있다.

임업의 발달은 나라가 부강하고 민족이 번영하며 사회가 문명함을 표징하는 하나의 척도이다.

1947년 9월, 중국인권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한 「공동강령」에는 “지하자원과 수원(水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국유삼림 및 기타자원은 모두 전민 소유에 속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낡은 중국의 임업소유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시켰으며 새 중국의 임업건설을 위한 조건을 창조해주었다. 동시에 그 강령에는 또 “삼림을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임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새 중국의 건국이후의 임업강령의 하나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중국임업건설의 하나의 새로운 역사시대에 들어섰음을 표징한다.

I. 국민경제 회복시기의 임업정책(1950-1952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우리나라는 국민경제회복 시기였다. 1950년 5월 16일에 정무원에서는 「전국임사업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임업발전계획, 방침, 임무와 조직기구, 령조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편적으로는 호림하고 중점적으로는 조림하며 합리적으로 벌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임업건설방침을 정하였다.

규정에는 분유림(分有林)은 “반드시 중앙인민정부 임업개간부(林懇部) 또는 중앙에서 각급임업기구에 위탁하여 경영벌채하되 계획적이고도 통일적

으로 공사용재(公私用材)를 공급한다”고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임업의 중앙통일경영관리를 실시하는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1950년 6월에 반포한 <<토지개혁법>> 제16조에는 “몰수하고 징수한 산림, 차산(茶山), 오동산(桐山), ……황무지 및 기타의 토지는 나눌 수 있는데 반드시 적당한 비례대로 보통 토지처럼 환산하여 통일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16조에는 또 “대삼림(大森林), 대황산(大黃山), 대황무지(大蕪地)는 일률적으로 국가소유로 하며 인민정부가 경영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몰수한 관료매판자산계급 임업기업(林場)과 목재공사에 대해 민주개혁을 진행하여 전민소유제의 임업기업소로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몰수하고 징수한 산림, 참대림(竹林), 오동산(桐山), 차산(茶山) 등을 비례에 따라 보통토지로 환산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산림의 소유증을 내어주고 소유자의 자유경영 매매와 대출의 권리와 승인하였다.

1951년 중앙인민정부는 「1951년 농림생산의 결정」을 제정하여 산림에 대한 관리, 벌채, 조림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림관리를 실시하며, 산에 불을 놓는것과 남벌을 금지하며, 땅나무 구역을 정하여 군중을 동원하여 나무와 과일을 심는 운동을 벌림으로써 합작조림을 실행한다. ②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부동한 지구를 나누어 나무와 풀뿌리를 파는 것을 금지하며, 황무지와 산비탈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③ 공유의 황산과 황무지는 군중을 고무격려하여 조림하게 하며 조림한 후에는 立木權을 조림자에게 준다. 이 일련의 정책으로 하여 군중이 적극 조림에 참여하여 조림업의 발전도 매우 빨라졌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토지개혁을 통하여 정책상에서 명확하게 산림권을 규정하고 국유림과 농민소유림 관계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농촌생산력이 크게 해방되어 임업건설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반면에 개체경제의 자유성, 분산성과 국가의 계획경제 건설과의 사이에 모순도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II.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시기의 임업정책 (1953-1957년)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계획경제 건설시기에 들어섰다. 국민경제 제1차5개년계획의 발전은 임업건설의 구체적인 생산건설임무를 규정해 주었다.

그 주요한 임무는 “군중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조림, 육림을 발전시키고 원시림의 개발과 이용을 독려하며 목재생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1957년에 목재 생산량이 2000만m³에 도달하는 계획을 세우되 그중 국영벌채기업소가 69%를 차지하여 계획적인 새임업 생산조직과 관리기구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구체적 임무에 근거하여 임업부에서는 제때에 “보편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산을 보호하며 대대적으로 조림육림하고 합리적으로 벌채하며 합리적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임업건설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1953년 정무원에서는 “군중을 발동하여 조림육림을 벌리는데에 관한 창림공작(創林工作)의 지시”를 반포하였다. 1956년에는 또 <<국유림주벌시행규정>>를 일련의 임업법규와 정책으로 임업생산건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관철집행됨에 따라 임업에서 개체경제와 국가계획경제간의 모순도 날로 침예하여졌다. 개체경제의 역량이 미약하여 새기술의 도입과 임업생산전업협작을 진행하는데 매우 큰 한계성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는 농업합작화의 실현과 농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는 데 관한 당과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임업생산에서 서로 협조작을 발전시켰다. 산주, 산촌농민들은 토지개혁에서 분배받은 산림을 임시호조조, 장기호조조등을 거쳐 합작사에 값을 쳐서 넣은 후 고금에 따라 수익배당금을 나누도록 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군중의 사상수준에 근거하여 고금합작공사를 만들었다. 즉 임목을 환산하여 공사에 투자하고 수익배당금을 나누어 가진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공사의 장부에 기입하고 합작공사의 매년 총수입에서 일정한 비례로 떼내어 입사한 사원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회원에게 고금합작공사의 생산노동정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공수를 기임하였으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당과 정부는 임업호조합작운동을 벌리는 한편, 임업의 특징에 부합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취하였다. 그 주요한 조치로는 : 임업농민이 생산한 목재는 호조합작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조약을 맺고 수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대부금을 주거나 장려해 파는 방법으로 호조합작자를 부추겨주었다. 이와 반대로 자유림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는 전제하에서만 목재를 자유로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약을 맺고 수구하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개체임업농민들이 호조합작에 참가하는 적극성을 제공하여 주었고 목재에 대한 엄격한 시장관리는 유력하게 사영(私營)목재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개조를 촉진시켰다.

5개년계획의 지도밑에 국유림구의 임업생산은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다. 새로 건설된 임업공업기업소는 원시림을 서둘러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벌채적지(伐採適地)의 개신(更新)사업이 제때에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삼림공업국(森工局)을 건립함과 아울러 이와 상응되는 삼림경영소를 건립하여 전문적으로 개신영림(更新營林)사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후에 삼림공업국과 삼림경영소가 각기 관리에 모순이 많은 탓으로 재차 합병되어 임업국으로 교체되었다. 이 시기의 임업의 주요정책은 : 1953년 정무원의 <<군중을 발동하여 조림, 육림운동을 벌리는데 관한 호립사업의 지시>>와 1965년의 「국유림주벌시행규정」 및 공무원의 「죽림(竹林)」을 보호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통지 등이 있었다. 이런 법규와 정책은 삼림에 대한 벌채이용, 개신육성, 보호관리등의 면에서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 시기임업의 발전에 일정한 축동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사회주의건설 경험이 부족하고 소련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임목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여 일부지구에서 새로운 임목권(林權) 분쟁이 생겼으며 국영임업국의 생산에서 원목생산을 위주로 하고 채벌만 중시하며 육림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총적으로 이 시기 우리나라 임업건설은 기본상 개체임업농민소유제가 집체소유제로 전변하는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였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기본적 임업체계를 확립하였다. 즉 전민소유제의 임업과 노동군중집체소유제임업 및 국가집체가 채취한 여러가지 형식의 연합경영의 임업체계를 건립하였다. 이 일련의 정책조치는 중국임업 건설의 진일보의 발전을 위하여 공고한 경제적기초를 닦아놓았다.

III. 곡절적인 발전시기의 임업정책(1958~1976년)

1958년에 중국은 대약진을 시작하였다. 강철을 대량으로 제련하고 한달음에 공산주의로 들어가기 위해 도처에서 <<공산풍>>이 불어쳤다. 이 사악한 바람은 법적으로 규정한 임업정책도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았으며 임목의 집체소유제를 마구 부정해버려 산림권의 엄중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리하여 산촌에서는 누구도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음대로 나무를 찍고 남벌하였는 바, 건국이래 처음으로 삼림자원이 막중한 파괴를 당하였다. 이 시기 임업정책도 현실을 무시하고 텅빈 구호만 제기하였다.

1958년 4월 중공중앙국무원의 「전국대규모조림에 관한 지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전국삼림면적을 10년안에 배로 늘려야 한다. 즉, 1억ha로부터 2억ha이상으로 증가시켜 전국평균삼림 피복률을 10%로부터 20%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국목재축적량이 15년안으로 80억m³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임업부에서는 심지어 공사(公社)마다 백무, 천무, 만무의 면적에 조림해야 하며 매호마다 열주, 백주, 천주를 식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높은 요구, 높은 지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1960년 겨울에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인식을 똑

바로 잡고 농촌사업에서의 사회주의적 오류를 시정하였다. 임업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1년 6월 25일 중공중앙에서는 「임목권을 확정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관한 약간의 정책규정(시행)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금후 새로 심은 각종 임목은 심은 자의 소유라는 원칙”을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사원개인이 심은 떠엄떠엄 널려있는 임목은 사원개인의 소유에 속하며 나무소유권을 반드시 장기적으로 고정하고 경계선을 굿고 표기를 해놓아야 하며 다시 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생산대대(大隊)와 생산대(生產隊)에서 사원개인의 나무를 벌때는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하여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정책을 재연명하였다. 이것은 대약진시기 임업에 대한 파괴를 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3년 5월 20일 국무원은 「산림보호조례」를 발표하여 이 시기의 임업정책을 제일 처음으로 법률형식으로 고정함으로써 임업정책에 자랑스런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조례」는 모두 7장 40조로서 총칙, 호림조직, 삼림관리, 산불예방과 끄기, 병충해방지, 장례와 벌금,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제정된 종합적인 삼림법규이다.

이 중에는 국가가 임목권에 대한 보호와 삼림경영 방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삼림경영방면의 규정은 “국유림은 국영림장에서 책임경영하며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의 모든 삼림은 응당 생산대에 도맡겨 경영하게 하며 생산대에 의한 경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인민공사 혹은 생산대대에서 전업대를 조직하여 경영하게 해야 한다.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임목은 고정적으로 사원에게 주어서 전문책임지고 경영하게 하되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집체소유의 삼림은 응당 삼림자원과 나무의 생장법칙에 맞아 매년의 벌채수당, 규격, 시간, 지점을 정한 다음, 허가를 받은 뒤에야 벌채할 수 있다.”, “삼림을 채벌한뒤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당해 혹은 이듬해 안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64년 우리나라에는 임업육림기금제도를 건립하여 삼림사업을 위한 믿음직한 자금재원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집체림구임업농민이 목재, 대나무등

임산물을 파는데 대하여 장려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정려제도를 세웠다.

이 일련의 웅바른 정책조치는 임업사업의 회복과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시켰으며 금후 삼림입법에 귀한 경험이 되었다.

국민경제와 임업생산이 생기발랄히 발전하고 있을 때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임표등 “4인방”은 극좌적 사조의 사악한 바람을 일으켜 양중한 파괴를 당하게 되었으며 임업생산도 기본상 정치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의 정책이라면 임목권에 변동이 심하고 “공산풍”이 다시 불어치면서 사원개인이 심은 나무를 ‘자본주의 꼬리’로 인정하여 다구 벌채하였으며 “임목은 심은 자의 소유”라는 임업정책도 암살되었다. 동시에 「억지공사 파도」, 「연함대」 등 바람이 불어치는 통에 생산대의 집체임권도 직접적인 침범을 받았으며 전국이래 삼림자원이 두번째로 대규모의 파괴를 당하였다.

IV. 진홍시기 임업정책(1976-현재)

10여년의 곡절적인 과정을 경과하여 삼림이 악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귀한 교훈도 얻었다. 1976년 “4인방”이 분쇄된 후, 특히 1978년 당의 11기 3중전회이래 당중앙에서는 시비를 바로잡고 임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복잡다난하던 임업정책도 정리되었고 임업정책 혁용범위도 부단히 넓혀졌으며, 사회생산력도 중대됨에 힘입어 임업정책법제사업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981년 3월, 국무원에서는 전국임업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이래 임업건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참답게 종결짓고 임업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연구하였으며 “삼림을 보호하고 임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은 이 시기 임업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건으로 되었다.

이 「결정」은 임업발전의 객관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삼림을 보호하고 임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정책과 중요조치를 저정하였으며 이 시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1. 산권, 임목권을 확립시켰으며, 자류산을 정하였으며 임업생산 책임제를 확정하였다.

1) 산권, 임목권의 확립

「결정」은 무릇 산림권이 정당한것이면 모두 승인해야 하며 다시 소홀히 변동시키지 말고 인민정부로부터 임목권리증을 발급해주며 소유권이 변하지 않음을 담보하며 일부지구의 산권, 임목권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실제에서 출발하여 구별해 나간다. 산권, 임목권이 동시에 한개 단위일 때는 산림권리증을 줄 수 있고 두개 단위일 때는 각각 산권리증과 임목권리증을 줄 수 있다. 집체와 개인 소유제의 임목은 현 인민정부로 부터 증서를 발급하고 현 지구와 성을 벗어난 국영림장 및 분문과 단위의 삼림은 지구행정관서(地區行政官署)나 성정부에서 증서를 발급하거나 입장이 소속되어 있는 현인민정부에서 각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삼림분쟁에 대한 처리

산림의 분쟁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내려온 문제로서 정횡이 비교적 복잡하고 정책성도 매우 강하였다. 「결정」은 이렇게 규정하였다 : “무릇 임목권에 논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부의 조직밑에서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며”, “협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에 올려보내 결정짓게 해야 한다”.

3) 자류산 확정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군중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원에게 준 자류산(황폐하게 말라버린 강 혹은 모래톱)은 사원이 식수하고 풀을 심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천이 증명하시피 자류산을 정하는 것은 한낱 효과가 아주 좋은 임업에서의 너그러운 정책이며 주요 목적은 군중의 맷나무를 해결하고 재목용문제를 해결하며 다목적경영을 발전시켜 군중의 수입을 증가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집체에 황산, 황무지가 많은 지방은 자류산을 많이 나누어주고 적은 지방은 적게 나누어 주며 없는 지방은 될 수 있는한 일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임지와 관목림을 사원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나, 수림을 이룬 집체림을 사원에게 자류산으로 주어서는 안된다. 자류산에 있는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는 사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도 있으며 수익은 비례에 의하여 나눌 수도 있으며 합리적으로 값을 쳐서 개인에게 줄 수도 있다. 임목이 재목이 되어 벌채할 때는 사원이 집체에 그 값을 상환한다. 자류산을 정한 후 현인민정부에서 자류산증을 내주고 사원이 장기간 사용하되 절대로 전당집하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종여할 수도 없고 다른데로 양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개간하여 밭을 일구지도 못하며 광산을 개발하지도 못한다. 이사할 때 자류산권은 가지고갈 수는 없으나 자류산의 나무를 이사가는 사원이 처리할 수 있다.

자류산에 녹화해야 할 년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만약 제 기한내에 녹화하지 못하면 집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다. 자류산에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숲을 만드는가를 사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자류산의 제조를 실시하고 사원의 가옥앞뒤에 나무를 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장기적인 정책이다. 「결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원은 집앞뒤, 자류산, 생산대에서 지정한 기타 지방에 나무를 심은 것은 영원히 사원의 소유에 속한다. 동시에 자녀들과 법적으로 정한 친속이 그것을 계속 계승할 수 있고 계속 이익을 얻을수 있다.”

4. 임업생산 책임제 실시

장기간 임업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며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에 부합되고 균중의 찬양과 응호를 받는 책임제라면 모두 실시할 수 있다.

책임제 형식으로는 전업책임제, 연합체책임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조에 맡기고 호에 평구며 노력에 떨굴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 형식은 이러하다 :

① 대면적식수조림 : 사(社)와 대(隊)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산장(山場), 시간, 임무, 질, 대가를 정한다음 초과하면 장례를 주고 감소되면 값을 물게 하는 한편 이것을 대, 조, 노력에 맡긴다.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을 때부터 유림(幼林)으로 키울 때까지 몇년간을 정해 놓고 하되 유림기를 지나 겸수에 합격되면 임장 혹은 전업대에 넘겨 경영관리하게 한다.

② 작은 조림지와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는 임목

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호에서 심으면 호에서 관리하고 대에서 심으면 대에서 관리하게 하고 이에 합리한 보수를 주거나 수익비례에 따라 나눈다.

③ 현재있는 대면적의 용재림(用材林), 수원림(水源林), 방호림에 대하여서는 될수 있는한 임장이거나 전업대를 건립하고 관리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은 산림보호원을 두고 관리하게 하고 전업책임제를 실시하여 산재하여 있는 나무들은 조나 호에 맡겨 관리하고 보호하게 해야 한다.

④ 집중되어 있고 연이어져 있는 경제림, 죽림(竹林)을 그 대부분을 전업대와 조에 맡기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주고 초과부분은 장례를 주며 감소된 부분은 배상시킨다.

⑤ 묘목을 키우는 것은 보통 사대(社隊), 임장, 전업대, 전업조 혹은 전업호가 맡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준다. 어떠한 형식의 책임제를 실시하든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태현을 보증해야 한다. 맡은 년한은 너무 짧지 말아야 하며 한번 정하면 5년, 10년, 심지어 더 긴 시간을 정할수 있다.

2. 목재에 대한 집중통일 관리를 실시

「결정」은 “목재는 집중통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국가에서 목재벌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국영림 단위와 림구의 사대(社隊) 집체에서 생산한 목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일괄적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통일성있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생산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성, 시, 자치구에서는 용재림의 소모량이 생장량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벌채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국영림업국과 임구현을 단위로 하여 윤벌(輪伐) 요구에 쫓아 합리적으로 각 년도의 목재, 참대 생산량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재목, 지방재목, 자용재목에 대하여서도 모두 채별계획에 넣고 하나의 장부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 “목재는 협상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런 조치의 실시는 지나친 벌채를 통제하고 삼림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목재구매와 판매

「결정」은 국가는 목재에 대하여 <<통구통소>>정책을 실시하고 임구소유제 및 임구, 비림구 등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① 국영림업국(國營 삼림공업국, 채벌장을 포함하여)에서 생산한 규격재목은 자용(自用)과 지방에서 규정에 의해 남긴 부분외는 전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구매한다.

② 임구사대(林區社隊)집체에서 생산한 규격재목은 국가에서 70%부터 90%까지 통일구매하고 구매적으로 구매하여두는 비례는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③ 국영림업국과 임구사대집체에서 생산한 비규격재목 및 사원개인의 목재에 대하여서는 국가에서 통일구매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비림구사대와 사원개인이 생산한 목재는 통일구매를 실시하지 않는다.

목재통일판매문제에 대하여 「결정」은 “임구목재 및 반성품은 임업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경영관리한다.”고 규정하였다.

3) 목재경영

목재경영에서 여러 단위가 동시에 끼여들어 경영하는 것을 염금한다. 국유림구는 국가에서 세분임업기업주관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집체림구의 목재 및 반성품은 임업부에 속하는 목재공사(혹은 삼림공업기업)에서 통일로 경영한다. 기초 부문에서 수요하는 목재성품, 반성품은 일률로 계획안에 넣지 않고 임업부문에서 조직하여 생산하고 물건태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관족시켜야 한다.

3. 임업에 대한 경제적 보조

장기적으로 임업자금이 부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정」은 국가는 임업에 경제보조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과거 임업에서 얻는 것은 많으나 임업발전을 위해 쓴 자금은 적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1) 목재가격의 조절

남방의 집체림구에서는 m^3 당 목재소매가격을 20%올리고, 동북, 내몽고림구에서는 m^3 당 목재소매가격을 10%올리며, 증가된 수입을 반드시 전

부 목재소매단위에 돌리며, 목재소매가격은 응당 일목권소유자에게 돌려야 하며 어떤 단위에 서든지 절대 떼어내지 못한다. 비록 목재가격이 올라가긴 갔지만 목재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현상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2) 임업기금제도의 도입

「결정」은 “국가의 임업투자, 재정, 은행대부금을 규정에 쫓아 떼어낸 육림기금과 생신개조자금을 임업기금에 넣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임업부문으로부터 규정년한에 따라 급에 나누어 관리하고 전문비용은 전문으로 사용하며 년말에 남은 것은 년도를 뛰어넘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반드시 지방재정에서 일부분자금을 떼내여 임업을 부추겨 주어야 한다. 공사를 지원하는 투자: 해방구, 소수민족지구, 변강지구, 발달되지 못한 지구의 기금: 은행에서 농업에 주는 대부금은 지방정부에서 일정한 비례로 규정하여 임업을 발전시키는 데 써야 한다.”

3) 「결정」의 요구에 쫓아 “집체림구와 국유림구(호룡강, 길림, 내몽골림구 제외)의 육림기금과 변경기금의 징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육림기금은 국유림구에서 떼어내는 현재표준 m^3 당 10.00 원으로부터 15.00 원(판매량에 따라 계산)으로 높이며 집체림은 m^3 당 7.00 원으로부터 12.00 원으로 높이여야 한다. 생신개조자금은 국유림구에서 떼내는 표준을 운남, 섬서, 서장, 감숙 등의 성, 자치구는 m^3 당 원복생산에 현재의 6.50 원으로부터 11.50 원으로 높여야 하며 기타 림구에서는 m^3 당 원목생산에 현재 5.00 원으로부터 10.00 원으로 높여야 하며 집체림구는 현재 m^3 당 생산에 5.00 원으로부터 10.00 원으로 제고해야 한다.

4) 임구식량의 구매와 판매 지표조절

임구군중의 식량표준이 부근의 식량생산 지구보다 낮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4. 목재의 종합 이용과 절약

1) 종합이용

규정은 “임구 <세가지 나머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나무조각을 생산하여 작은 목재가공과 인조섬유판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재종합이용은 경공업성질에 속하므로 각지구, 각부문에서는 자금, 연료, 동력 등 방

면에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목재종합이용을 다그침에 있어서 반드시 택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다.

2) 목재절약대용(代用)

세멘트제품으로 목재를 대체하며 금속제품으로 목재를 대체하며 강재, 비닐, 알루미니움 등 제품을 발전시켜 가구 등 일용품생산을 위한 목재를 더체해야 한다.

5. 임구의 회복과 건설

목재산량을 조절, 감소하고 그것을 한시기 확정시켜야 한다. 합리적으로 임분의 종류를 여러종으로 나누고 방호림, 신탄림, 경제림 및 자연보호구 등 특종용도림의 비중을 적당히 제고해야 한다.

영림면에서 다년래 삼공, 영림 두개 체계, 두갈리 통로, 두가지 대우를 개혁하고 삼공이 영림을 경시하는 작법을 개혁하기 위하여 「결정」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상적으로나 실제 공작에서 삼림공업과 영림을 친정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① 금후 새림구를 개발하되 전면적으로 삼림을 경영하는 데로 부터 출발하여 삼공과 영림의 생산건설투자를 통일적으로 합리하게 안배해야 한다.

② 아직 건설되지 못한 후기림장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에서 그건설을 다그쳐 진행해야 하며 합리하게 안배하고 합리하게 경영해야 한다.

③ 임업기업소는 반드시 벌채한 뒤 당해 혹은 그 이듬해에 가서 갱신해야 하며 앞으로 임업기업소의 검토는 갱신조림과 육림을 제일 우선하며 기업이윤 보유액수 및 직공경제이익과 긴밀히 연계시키며 임무를 완성못하면 령도의 책임을 추궁한다.

6. 대대적으로 조림육림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980년 중공 중앙의 「식수조림의 확대에 관한 지시」를 적절히 관철, 집행하며 사대집체에 의거하여 조림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국영조림을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원개인의 식수를 고무하는 방침도 견지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많은 군중과 각행, 각업을 동원하여 착실하게 식수조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평원과 구릉을 녹화해야 하며 신탄

림, 경제림, 풍산림과 「3북(三北)」 방호림체계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결정」은 또 임업과학기술, 교육 및 국가가 임업에 대한 영도 등 방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세웠다.

총적으로, 이런 방침정책을 임업진흥시기 중국 임업의 발전건설에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 이리하여 임업건설이 지속인 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는 또한 임업건설이 법제시제에 들어설 기초를 닦아주었다.

198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을 제정하였다. 이 「삼림법」은 우리나라 임업발전역사에서 가장 성숙되고 가장 완벽한 발전으로서의 삼림법이다. 전국 30년대 우리나라 임업발전행정에서 거둔 경험의 총화이다.

「삼림법」의 실시는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 삼림을 다스리는 임업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표징한다. 이는 임업현대화 실현에 대하여 기필코 중대한 역사적작용을 할 것이다.

개혁이 부단히 침투됨에 따라 1979년 하반기부터 국영임업기업의 이윤분배방법에 대하여 조절을 하였다.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이하여 국영임업기업소는 보편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기업소 경영의 좋고나쁨을 기업소의 물질이익과 연계시켰다. 즉, 기업소의 구체정황에 비추어 이윤을 남기는 비례를 정하였으며 기업소가 나누어가진 이윤을 생산발전기금, 집체복리기금과 직공장려기금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런 제도는 과거의 통일적으로 수입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며 통일적으로 손익을 책임지는 작법보다 훨씬 진보하였으며 어느 정도 국가, 집체, 개인 3자간의 물질이익을 결합시켰는바 기업소로 하여금 일정한 재산권과 이익이 있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소가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면에서 추진작용을 놓았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자체의 국한성이 있는 바 아직까지 완전히 “큰 가마밥”을 먹는 현상을 개변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겨두는 조건하에서 기업소가 이윤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는데 이윤이 적다해도 꼭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기업소들은 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나무

를 많이 베어 이윤을 늘리고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는가 하면 어떤 기업소는 원래의 우월한 자원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사리 이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불평등한 현상이 존재하였다. 이리하여 1983년부터 우리나라 임업계통의 부분행업과 기업소들에서는 이윤 대신에 세금을 상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바 원래 국가에 바치는 이윤을 자원세, 수입조절세, 소득세, 고정자산점용비와 유동자금점용비 등으로 고쳤으며 재정기관에서 각항세금률, 비용률을 정하고 한번 정하면 3년간 고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우선 기업소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해결하였다. 그 다음 기업소에서 계획규정을 완성한 뒤 소득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는 기업소 경영성과의 좋고 나쁨에 의해 절대부분이 결정되었는바 기업소의 주동성, 창발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수한 세금량과 이윤을 얹는 량이 밀접한 의뢰관계가 있어 재정수입의 근본적인 증장 을 추진시킬 수 있었다.

임업건설과 전국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입됨에 따라, 특히는 1984년 당의 12기 3중전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현단계사회주의 공유제기초위에서의 계획있는 상품경제개혁의 실시 및 성시를 중점으로 하는 경제체제개혁의 전면적인 실시와 더불어 임업계혁도 부단히 심입되어 성시와 농촌이 서로 추진하고 서로 어울리며 발전하는 국면이 나타났으며 광범한 농촌이 상품생산의 발전을 다그치는 절호의 기회가 탁쳐왔다. 임구, 산구에 실시하는 정책도 점점 더 좋아졌다. 1985년 중앙1호 둔건은 「산구 25° 이상의 비탈밭에는 계획있고 보조있게 밭을 버리고 임지, 목축지로 다시 만들며 반드시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집체림구에서는 목재의 통일적 구매를 취소하고 목재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임업농민과 집체에서 목재를 자유로 시장에 가져다 협상하여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국영임장도 직공가정호도거리를 실시하거나 부근의 농민과 연합하여 경영할 수 있게 하였다.

1980년 10월에 유관 규정에 의해 동북, 내몽고국 유림구의 원목의 평균공장가격을 m^3 當 143元으로 조절하였으며 값을 44%폭까지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남방집체림구의 목재공장가격은 m^3 當 평균 96.40元이고 동북국유림구는 80.40元/ m^3 이다.

이러한 방침정책의 실시는 목재가격을 조절하고 목재수입에서 임업발전의 자금문제를 해결하며 영림에 투자하여 소모한 비용을 미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임구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를 띠게 하였으며 임구인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목재가격을 조절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불합리하며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임업발전전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모두어 말하면 당의 11기3중전회이래 임업정책 방침이 정확하였기에 임업발전 형세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임업개혁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으며 우리나라 임업건설도 새로운 진홍시기에 들어섰다.

목전 우리나라 임업경제에는 뭇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① 형식이 다양하고 총차가 다종하며 내용이 다채로운 횡적경제연계가 신속히 발전되고 있다.

② 사회주의공유제를 주체로한 여러가지 경제형식이 서로 침투되고 공동히 발전하면서 하나의 다원화 사회주의의 임업소유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③ 사회주의의 임산품시장의 추형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가격 법칙이 임업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작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④ 나라에서 거시경제에 대하여 통제하고 조절하며 행정적인 전체적인 통제를 위주로 하던 것으로부터 융통성있게 경제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통제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⑤ 농촌임구도 계획있게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궤도에 올랐으며 바야흐로 상품화, 사회화로 진군하고 있다.

⑥ 임업전업호와 연합체가 가일층 발전되고 국가, 집체, 개인이 동시에 일떠나고 집집마다 임업을 경영하는 생동활발한 국면이 펼쳐졌다.

그리나 임업생산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실제상황에 비추어보면 중국임업건설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재가격결정, 경제관리체계, 영림을 기초로 하는 방침 등의 면

에서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전일보의 조절, 개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정책상에서도 국내외의 선진 경험을 널리 배우고 자기의 현실에 결부시켜 부단히 모색

하고 부단히 구체화하고 부단히 완벽화함으로써 중국임업이 빠른 기일내로 건전한 발전궤도에 오르게 해야 한다.